

가산금 납부고지서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「국유재산법」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을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
제 호	재산의 표시		
재산의 피해내용			
<table><tr><td>금액</td><td>원</td></tr></table>		금액	원
금액	원		
납부장소:			
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내시기 바랍니다. 만일,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「국유재산법」 제73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.			

주: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, 지목, 면적을 적고, 재산이 법 제5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, 유형(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(가), 같은 호 나목은 (나), 같은 호 다목은 (다), 같은 호 라목은 (라)로 기재),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년 월 일

중앙관서의 장

적 인